

[별표 2]

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조직 및 인력	조직	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업무 전담조직 보유
	인력	<p>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10명 이상의 시험 또는 인증 전문 인력 보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.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
설비 및 환경	설비	<p>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을 시험할 수 있는 다음의 핵심 시험설비 보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네트워크 분야 시험설비 2. 방송 분야 시험설비 3. 이동통신 분야 시험설비 4. SW 분야 시험설비
	환경	시험설비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 보유
업무 절차		<p>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의 업무절차 규정을 보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증업무의 독립성, 공정성 및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2. 인증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 3.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 4. 인증기준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5. 시설 및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 6. 인증의 품질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7. 문서관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8. 위탁 계약에 관한 규정 9. 고객만족, 이의·불만제기, 분쟁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10. 기타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업무절차